

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자문단회의 및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자문단 위원의 연임 제한(안 제4조)
 - 연임 제한 없음 → 한 차례만 연임
- 자문단회의 운영규정 보완(안 제6조)
 - 연2회 정기회의 개최 → 필요한 경우 개최
- 자문단 간사의 직위명칭 변경 (안 제12조)
 - 지역안전팀장 → 안전총괄업무과장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안전관리 자문단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으로,
- 자문단 회의를 연2회에서 필요할 경우 개최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, 자문단 위원의 연임제한을 두어 형식적 구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